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반복·장기 민원 분석·대응 및 경찰관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6명(행정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 2명), 소속기관에 92명(행정주사 16명, 행정주사보 38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보건서기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정원대비표 첨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단서 중 “96명”을 “102명”으로, “행정주사 9명”을 “행정주사 13명”으로 하고, “시설주사 3명”을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686명”을 “778명”으로,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을 “행정주사 44명, 행정주사보 117명”으로, “전산주사보 1명”을 “전산주사보 1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으로, “간호서기 1명”을 “간호서기 1명, 보건서기 20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046”을 “2,048”로, 경찰공무원 계 “1,375”를 “1,376”으로, 경정 “164”를 “165”로, 일반직 계 “667”을 “668”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142”를 “2,150”으로, 경찰공무원 계 “1,375”를 “1,376”으로, 경정 “164”를 “165”로, 일반직 계 “763”을 “770”로, 행정주사 “31”을 “35”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4”로 하고,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다음에 “의료기술주사 2”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158”을 “135,250”으로, 일반직 계 “5,053”을 “5,145”로, 행정주사 “114”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455”를 “493”으로 하며, 공

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 다음에 “의료기술주사보 18”
를 신설하고, 임업서기 1 다음에 “보건서기 20”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
원되는 별표 6의 정원 6명(행정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 6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8의 정원 92명(행정주사 16명, 행
정주사보 38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보건서기 20명)은 2029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u>96명</u>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u>행정주사 9명</u> , 전산주사 1명, <u>시설주사 3명</u> ,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u>102명</u> ----- ----- ----- ----- ----- <u>행정주사 13명,</u> <u>--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u> ----- ----- -----

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68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35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778명-----
-- 행정주사 44명, 행정주사보 117명-----
----- 전산주사보 1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
----- 간호서기 1명, 보건서기 20명, ---

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046</u>	• <u>2,048</u>	+2
경찰공무원 계	<u>1,375</u>	<u>1,376</u>	+1
•	•	•	
•	•	•	
경 정	<u>164</u>	<u>165</u>	+1
•	•	•	
•	•	•	
일반직 계	<u>667</u>	<u>668</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4</u>	+1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42</u>	<u>2,150</u>	+8
경찰공무원 계	<u>1,375</u>	<u>1,376</u>	+1
•	•	•	
•	•	•	
경 정	<u>164</u>	<u>165</u>	+1
•	•	•	
•	•	•	
일반직 계	<u>763</u>	<u>770</u>	+7
•	•	•	
•	•	•	
행정주사	<u>31</u>	<u>35</u>	+4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4</u>	+1
•	•	•	
•	•	•	
<u>의료기술주사</u>	<u><신 설></u>	<u>2</u>	+2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5,158</u>	• <u>135,250</u>	+92
일반직 계	• <u>5,053</u>	• <u>5,145</u>	+92
행정주사	• <u>114</u>	• <u>130</u>	+16
행정주사보	• <u>455</u>	• <u>493</u>	+38
의료기술주사보	• <u><신 설></u>	• <u>18</u>	+18
보건서기	• <u><신 설></u>	• <u>20</u>	+20
	•	•	
	•	•	